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회)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나.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마. 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비치”를 “비치 및 시행”으로 한다.

제5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인력이 별표 6의2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54조제2항 중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한다.

별표 4에 보안장비의 세부 기준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지역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을 설치한다.

별표 6의2를 별표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개정 규

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부터 적용한다.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요원 교육(제50조제8항 관련)

1.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소 교육 시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신규교육(최초 1회) : 40시간
 - 나. 정기교육(연 1회) : 8시간
2. 신규교육 과정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보안검색 관련 법령, 검색 목적, 이용객 대응 방법
 - 나. 승객의 신체,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검색 규정 및 절차
 - 다. 위해물품 식별 방법 및 적발 시 행동 및 처리 절차
 - 라. 엑스선 검색 장비 및 폭발물 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장비 관련 사항
 - 마. 엑스선 검색 장비 영상이미지 판독 방법
 - 사. 문형 금속탐지기, 휴대형 금속탐지기, 신체 물리적 수색 등을 이용한 승객 보안검색 방법
 - 아. 휴대물에 대한 물리적 검색 방법
 - 자. 비상사태 시 경보, 통보 절차
3. 정기교육 과정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 사항
 - 나. 위해물품 식별 방법 및 적발 시 행동 및 처리 절차
 - 다. 엑스선 검색 장비 영상이미지 판독 방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9. (생략) 10. 항만시설에 있는 <u>국제항선박</u> 에서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의 조치 11. ~ 14. (생략) ②·③ (생략)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① ----- ----- ----- ----- ----- ----- ----- -----.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려면 항만시설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u>비치</u> 여부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u>비치 및 시행</u> ----- -----

2. 3. (생략) ③ ~ ⑤ (생략)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 ⑦ (생략) <u><신설></u>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항만 시설소유자는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검색인력이 별표 6의2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해야한다.</u>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 ① (생략) ②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u>별표 6의2와 같다.</u> ③ ~ ⑤ (생략)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별표 6의3-----.</u> ③ ~ ⑤ (현행과 같음)